

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3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정이유

○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권자 확대를 위함

3. 주요내용

○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권자 확대 (안 제4조제1항)

- 신청권자를 개정하여 보호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청소년 본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

○ 별지 1호서식 수정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영동군의회
- 전 화 : 043)740-3087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| 조례안 내용 | 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

영동군 조례 제 호

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보호자”를 “저소득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”로 한다.

별지 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4조(지급신청 및 결정) ① <u>보호</u> <u>자</u>는 건강증진비를 지급 받으려 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 지 관할 읍장·면장에게 건강증 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 다.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 | <p>제4조(지급신청 및 결정) ① <u>저소</u> <u>득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</u>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|